

『서울특별시립병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 존경하는 김혜련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강서구 제4선거구 출신 김용연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지금부터 『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조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인구고령화와 만성질환으로 인한 의료비 부담 증가로 공
공보건의료서비스와 시립병원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와 수
요가 증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서울시립병원의 경우 고질적인 의료 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시민들에게 양질의 적정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의료 인력 처우개선과 인적 자원 관리방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이에 의료 인력을 대상으로 체계적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표창 및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시립병원 의료 인력의 처우개선과 동기부여를 통한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질 향상과 이를 통한 서울시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 다음으로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0조제2항제6호 위탁·운영할 수 있는 병원에서 서울특별시 용인정신병원을 삭제하였고,

안 제20조제1항에서 3항에 시립병원 의료 인력이 교육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21조에서 시장이 시립병원과 의료 인력에게 표창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22조제1항에서 3항에 성과평가를 통해 우수 기관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22조제3호에서 시장이 병원장에게 의료인 보호와 교육 및 훈련에 대한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 존경하는 김혜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은 조례 개정 과정에서 해당 부서와 지속적 협의를 통해 관련 사항을 마련하였고, 입법예고 등 조례 개정애 필요한 행정절차를 준수하였습니다.

□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의 조례 개정 취지를 이해하셔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리며, 이상 조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